

남북교역의 원산지문제에 관한 고찰

박 광 서*

-
- I. 서론
 - II. 남북교역 현황
 - III. 원산지제도
 - IV. 남북교역의 원산지 문제
 - V. 결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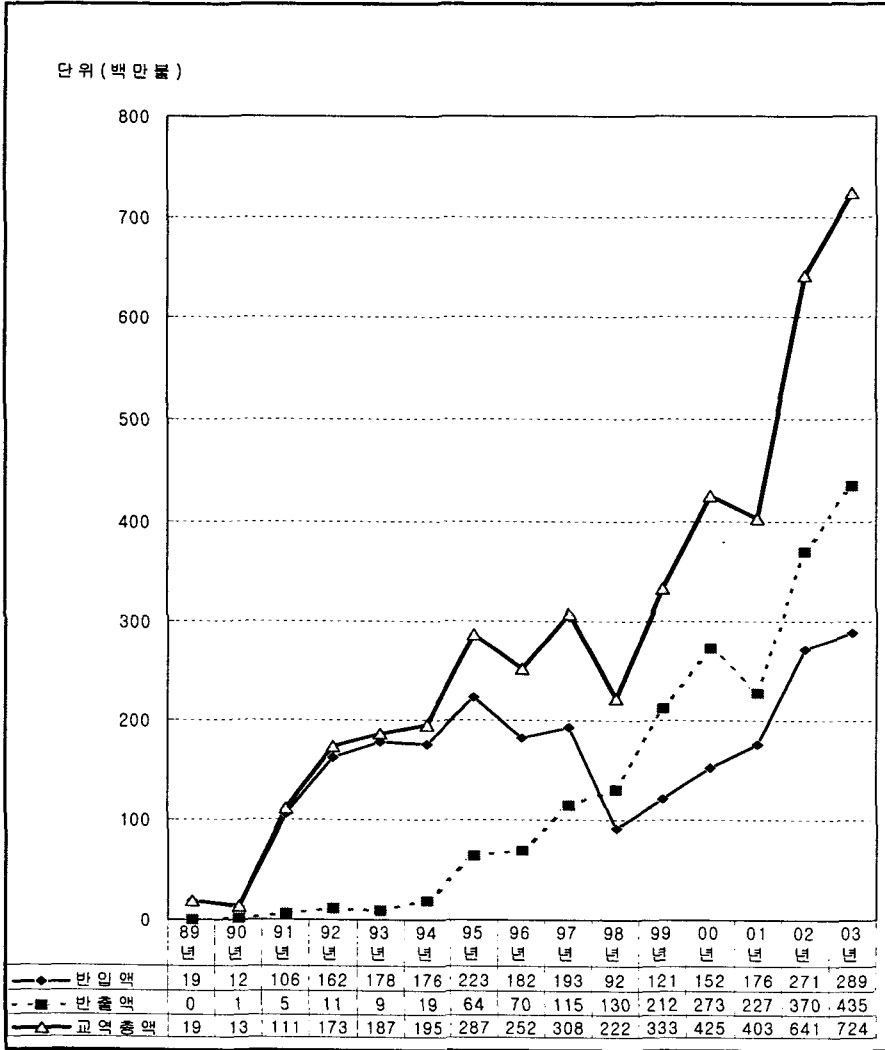
I. 서론

1988년 정부의 “7.7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교역¹⁾은 괄목할만한 量的 성장을 거듭하면서 금년으로 16년째에 접어들었다. 교역 첫해인 1989년에 남북교역 규모가 1천9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7억2천4백만 달러로 무려 38배나 증가하였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 비중 또한 급성장을 하여 교역초기인 1990년에 0.4%²⁾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30.1%에 달하여, 북한 무역에서 남한의 차지하는 위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³⁾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 1) 남북교역은 민족간 내부거래로서 수출·수입 대신 반출·반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출·반입이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 2)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에 수출 1,960백만달러, 수입 2,760백만달러로 무역은 4,720백만달러였으나, 2002년도에는 22억6천만달러, 2003년에는 23억9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KOTRA 해외무역관보고)
- 3)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순위는 중국(10억 2천만불, 42.8%)에 이어 2위

[표 1] 연도별 남북교역 추이



* 주 1)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하지만 이러한 민족간 내부거래로서 남북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남북거래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점검 및 글로벌경제체제에 대한 대

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이 3위(2억 6천5백만불, 11.1%)를 기록하고 있다.

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반입측면에서 보면, 일부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여 반입하는 “위장반입 문제”, 및 위탁가공물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북한 제조 물품의 “원산지판정문제” 및 남북간의 신원산지증명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반출의 경우에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과 동일 지위에 있는데서 오는 교역물자 반출통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반출을 원하는 교역업체는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고 본다.

본 稿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반되는 특수무역으로서 남북 교역과 관련된 원산지문제를 學界에 소개함으로써 남북교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돕는데 있다.

II. 남북교역현황

2003년 남북교역은 전년도 6억 41백만 달러에서 12.9% 증가한 7억 24백만 달러에 달하여 양적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독립채산제 및 성과급제 강화 등 일부 경제개혁 조치의 영향과 남한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난 타결 의지 등으로 전반적인 교역 분위기는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는 남한이 4억 16백만 달러 적자이고,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누적 실질 수지는 이보다 훨씬 적자 폭이 큰 16억 73백만달러이다.

이러한 교역수지 구조는 금강산관광사업, 비료지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와 식량차관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북한 경제의 반입 여력이 확보되고 금년 중 실시예정인 청산결제 등을 통해 교역품목이 확대되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2003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반입	반출	합계	구성비	전년비 증가율	
거래	상업적 거래	177,443 (167,400)	46,227 (4,382)	223,670 (171,782)	30.9 (26.8)	30.2
	위탁가공	111,639 (102,789)	73,370 (68,388)	185,009 (171,177)	25.5 (26.7)	8.1
	소계	289,082 (270,189)	119,597 (72,770)	408,679 (342,959)	56.4 (53.4)	19.2
비 거래	경수로사업	- (1)	23,767 (58,568)	23,768 (58,569)	3.3 (9.1)	-59.4
	금강산관광사업	- (1)	16,105 (11,916)	16,105 (11,916)	2.2 (1.9)	35.2
	협력사업	170 (1,385)	4,846 (11,665)	5,016 (13,051)	0.7 (2.0)	-61.6
	KEDO 중유	- (0)	- (2,041)	- (2,041)	0.0 (0.3)	-100.0
	대북지원	- (0)	270,650 (213,194)	270,650 (213,194)	37.4 (33.2)	27.0
소계	170 (1,387)	315,368 (297,384)	315,539 (298,771)	43.6 (46.6)	5.6	
총 계	289,252 (271,575)	434,965 (370,155)	724,217 (641,730)	100.0	12.9	

* 주 : 1. ()안은 2002년 금액임.

2. 자료 : 남북경협정보”, www.kita.net(종합무역정보) 한국무역협회,

상업적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거래성 교역은 4억 9백만달러로 전체 교역중 56.4%를 차지하였다. 특히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이 1억 25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봉제 의류 등의 위탁가공 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대비 8.6% 증가한 1억 12백만달러 이었다

한편 지원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은 3억 16백만달러로 5.6% 증가에 그쳐

2002년의 79%에 비해 큰폭 둔화하였다. 쌀, 비료, 의약품 등 물자지원은 큰폭 늘었으나 대북 경수로 지원물자 등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측 거래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교역형태이다. 2003년도 위탁가공 교역액은 1억8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의 25.5%, 거래성 교역액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위탁가공교역 참가 업체수는 109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100개 이상 유지하고 있어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역구조의 취약성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남한의 물자지원 등 비거래성교역이 전체 교역액의 44%를 차지하고 거래성교역도 1차산품과 의류 임가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교역 환경면에서도 북핵문제 등에 따르는 불확실성 이외에도 남북간 물류애로와 직접 통신 및 통행의 제약 등 교역여건이 불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Ⅲ. 원산지제도

1. 원산지제도의 의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ing)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은 상식적인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의 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원산지는 그 자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다른 무역정책수

4) 한국무역협회, 2003년 남북교역 평가, www.kita.net(종합무역정보 - 남북경협정보),

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북한의 공장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를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가 된다.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 비중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북한(Made in DPRK)이 원산지가 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섬유 쿼터 및 관세율 적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있다.

원산지제도는 크게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증명(판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2절에서 원산지표시를, 제3절에서 원산지판정을 규정하고 있다.

(1)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한 수입행위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면서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의 권리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산물판매시장에서 보면 조기(국산, 연근해), 조기(국산, 원양산) 또는 조기(중국산)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된다.

시장에서 북한산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은 다른 외국물품과 달리 같은 민족물품이라는 친밀성과 함께 북한의 천연상태의 미가공 식료품 등의 반입되는 경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 등의 이유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⁵⁾.

(2) 원산지판정기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1개국에서 물품이 완전히 획득·생산 및 사육 번식된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생산된 우유는 당연히 완전생산기준에 의하여 당해국이 우유의 원산지가 된다. 하지만 이 우유를 B국에서 수입하여 요구르트를 만들었다면 최종제품인 요구르트는 2개국에 걸쳐서 생산된 물품이기 때문에 완전생산 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며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실질적변형기준은 2개국 이상에 걸쳐 물품이 생산되었을 때 개별국의 주요 제조 가공 생산과정에서 물품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판정기준이다.

실질적 변형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가공공정기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HS번호(세번)의 6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이상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령은 부가가치율 35%이상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고 이 기준에 적용되는 품목은 카메라 1개 품목⁶⁾이다. 관세법령에서는 50%이상 부가가치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며, 적용대상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한정되고 있다⁷⁾.

특정가공공정기준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이며, 예를 들면,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TV는 브라운관(CRT)생산국을 원산지로 한다.

5) 강홍중, 남·북한 관세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p10

6)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제5조

북한지역에서 합영 또는 합작 생산하는 위탁가공 생산품의 경우, 아직까지는 생산 후 거의 전량을 남한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원산지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2007년 이후에는 개성공단 및 기타 북한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필연적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인데,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2. 원산지관련 국내법규

우리나라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법⁸⁾에서는 주로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고 있고, 대외무역법⁹⁾에서는 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3. 남북간 원산지 관련 합의서 주요내용

2003년 7월 31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에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가 채택되어,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국산 등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국내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첫발을 내딛었다.

동 합의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요건,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확인절차 및 확인기관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년 9월 29일에 정식 발효되었다¹⁰⁾. 이하에서 합의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정리해 본다.

8)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76조

9) 대외무역법 제23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내지 제8-3-4조

10)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3년 9월 29일에 통일부고시 제2003-4호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종전에는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북한의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 무역은행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반입 통관이 가능하였지만, 신원산지제도¹¹⁾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총괄기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북한의 민경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서 제출해야 한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아울러 남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인장 등 관련사항을 상호 통보하여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원산지확인기준

종전에는 남북간의 통일된 원산지기준이 없어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북한산으로 인정하고 관세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신원산지제도 아래에서는 합의서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관세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합의서 제4조에서는 당해 물품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만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또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예상되며, 이는 합의서 제8조에 따라 구성하기로 된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의에서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합의서 제4조 제2항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품의 유형을 열거하여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있다.

1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새롭게 시행하는 원산지 제도를 편의상 신원산지제도로 칭한다.

(3) 원산지확인 및 확인기관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합의서 제5조에 따라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북측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북한 현지를 방문하여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 기간동안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에 인천세관 및 부산세관에서만 5~6차례 원산지관련 사실 확인을 북측 민경련에 의뢰하였으며, 이 중 1건은 사실과 달라서 북한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합의서 제6조에 따라서 북측 민경련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은 논리상 모순은 있지만 북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경련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우리측의 원산지확인 창구는 관세청을 지정했다.

IV. 남북교역과 원산지문제

남북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는 반입과 반출로 구분하여 반입의 경우는 “원산지 위장 반입문제”와 북측에서의 위탁가공무역 물품의 “해외 판로에 관한 문제”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이 활성화되는 2007년 이후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출의 경우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물품의 대북 반출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다.

1. 원산지 위장 반입문제

(1) 원산지 위장 반입문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¹²⁾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반입은 내국거래로 인정되고, 남북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여 중국 등 저질의 제3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어 관세를 포탈하는 등 공정무역과 통관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2003년 4월에 부산세관에서는 러시아산 냉동 명태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마른명태(포,채)로 건조 가공 후에 북한 나진으로 내륙운송하여 북한 내에서 가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채 국내에 반입 신고한 사건¹³⁾을 들 수 있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통관되는 경우, 관세면제 혜택으로 반입 단가가 저렴한데도 시장에서는 북한산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악덕업체의 위장반입 유혹을 자극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는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알고 소비하는 등 유통질서의 교란 및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러한 위·변조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우리 세관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남북간 원산지인정기준이 없어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였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¹⁴⁾를 하는 등 엄격한 통관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통관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남북교역 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등의 해소를 위하여 2003년 7월 31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에서 남북 당국자간에 채택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위장반입 사례가 감소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대북 교역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12) 1990년 8월 1일 제정, 법률 제4239호

법 제26조 2항 단서, 시행령 제 50조 2항

13) 북한산 위장 수산물사건으로는 최대규모로서 466톤, 시가 차액만 해도 81억원에 달하는 대형사건이었다.

14)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 C/S(Cargo selectivity)통관 시스템으로 5~10%정도 발체검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남북교역 물품의 반입의 경우는 일부 위탁가공무역물품을 제외하고 100% 검사를 하고 있다.

(2) 신원산지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

지난해 9월 29일 시행된 신원산지제도의 시행에 따라 북측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인 민경련은 자신이 발급한 원산지증명 발급리스트를 관세청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원산지 위장반입 사례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북한 물품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될 것이며, 남북교역의 확대 및 관세면제의 실질적 혜택이 북한에 귀속되는 효과 등 남북교역의 실질적 이익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신원산지제도의 운영면에서 북측의 민경련은 합의서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교역업체에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긴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신원산지제도의 시행초기부터 예상되던 것으로서, 민경련에서 대북업체에 대해 민경련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발급을 거부할 방침을 통보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일부 업계가 의견을 모아 통일부에 건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남측의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부칙에서 민경련 이외의 기존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는 3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신원산지제도 시행에 대한 대북교역업계의 의견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민경련으로 변경됨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이며, 이에 대하여 남북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에서 북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조사¹⁵⁾에 따르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종전 조선수출입검사위원회 및 民經聯에서 民經聯으로 일원화('03. 9.30. 원산지 확인절차)되면서 남북교역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① 민경련은 원칙이 없으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일방적 자세 견지 ②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민경련은 가격의 3~5%를 발행비용으로 요구하여 물품 가격 20~30% 상승 ③ 민경련은 남측 회사의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서류 요구하여 기업기밀 노출 우려 ④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민경련 서류가 원활하지 않고 또 수출

15) 통일부·한국무역협회 공동 주관 “남북교역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보고서”, 2004. 8. 5.

창구가 일원화되어 가격상승, 타 회사와의 가격 결정, 제품품질의 선별성 및 상호신뢰가 부족한 실정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그 발급 수수료가 미미한 것이어서 일반 수출입의 경우에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즉, 우리나라의 건당 원산지발급 수수료는 5,000원에 불과하고 GSP원산지 또는 남북교역 물품 원산지는 500원에 불과하다. 북측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로 물품가액의 3~5%를 요구하는 것은 발급 수수료라기 보다는 일종의 수출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탁가공물품의 원산지문제

남측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측의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우리 교역업체의 꿈은 개성공단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992년에 시작하여 금년으로 11년째를 맞이하여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 위탁가공업체들의 열망은 더 없이 높아만 가고 있다. 하지만 남북이 합작하여 생산한 제품을 해외시장 수출을 고려할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해 규제와 차별을 하는 시장이 있으므로 판매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 제1조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회원국이 개별 법령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한 상품이 2개나라 이상에서 생산되었다면 최종적인 실질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판정기준 및 각국의 판례 등을 살펴볼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대부분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개성공단에서는 원부자재를 남한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기 때문에 2개국 이상에 걸친 생산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이나 주요공정 기준 등을 따르게 된다. 북한에서의 생산·제조 공정은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로 보아야한다¹⁶⁾.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원산지 관련규정 및 판례 등을 살펴보면, 미국은 연방원산지표시규정 제134.1조에서 “원산지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재배국을 가리키며 다른 나라에서 해당 물품에 작업이나 물질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다른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세관과 법원에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미국 판례들¹⁷⁾에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유추해석하면, 북한에서 가공된 부분이 상품가치의 65%를 초과했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산으로 보아야하며, 상품가치의 15%정도의 공정은 원산지 변경의 안전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5~65% 사이의 상품 가치가 북측에서 가공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변화 여부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또는 기타 북한지역에서 상품을 가공·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공정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산으로 판명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 미국 통상법 제2432조에 의해 차별적 대우를 받게되며 이는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관세율은 일반관세, 특별관세 및 특혜관세로 대별할 수 있으며, 관세율의 적용순서는 US Tariff Schedule, General Note 3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합관세율표상 관세율은 Column 1과 Column 2로 구분하고, Column 1에는 General(양허관세율)과 Special(특혜관세율)을 규정하고, Column 2에는 양허관세율과 특허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국가에 적용하는 세율을 정하고 있다.

현재 Column 2의 적용을 받는 비양허세율 적용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북한, 베트남, 쿠바이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 관세율은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예컨대, 한국과 같은 제1란의 일반관세율 국가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

16) 김삼식,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시장 확보방안, 남북경협전략, KOTRA, pp61. 59~90

17) 토링턴회사 케이스 : Torrington Company v. United States, 1985

페로스탈 금속회사 케이스 : Ferrostaal Corporation v. United States, 1987

슈페리어 와이어 케이스 :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1987, 1989

주니가회사 케이스 : F.F. Zuniga a/c Refractarios Monterrey, S.A v. United States, 1993

폰에는 개당 6.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이 제품이 북한과 같은 제2관 관세를 적용국가에서 수입되면 4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북한의 개성공단 또는 기타지역에서의 위탁가공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시장은 현재와 같이 남한 내수시장이 주가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내수시장 및 해외수출시장을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내수시장은 가능성이 적을 것이며,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으로는 해당시장의 크기, 시장 성숙도, 경제발전단계 및 북한산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최대시장인 미국, 일본 및 EU시장에 대해서는 북한산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이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북한에 차별이 없는 국가 및 신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BRICs¹⁸⁾에 대한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

냉전시대 서방 선진국은 공산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공산권에 군사무기는 물론 관련 산업장비 및 기술의 수출의 통제하는 기구인 COCOM을 결성했다. 이후 COCOM은 공산권 붕괴로 1994년에 해체되었으나 서방제국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지원국 등 소위 우려국가¹⁹⁾로 다시 관심을 돌려 핵무기,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송수단인 미사일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Export Control Regime)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 6월 호주그룹(Australian Group; 생화학무기 비확산 체제) 총회에서는 각 회원국이 Catch-all제도 및 Non-undercut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고, 미국(1990), EU(1995), 일본(2002)등 27개국이 이를 채택해 운영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Catch-all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이 아니라고 하

18)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를 말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신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9) 우려국가(Countries of concern)는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사단, 북한, 쿠바 등 7개국을 말함

더라도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전략물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엄격히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Non-undercut은 어느 한 국가가 특정 품목을 특정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도 이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비확산체제의 강력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첨단산업 장비 및 기술 수입을 원활히 하고 수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통상산업적 목적 하에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고, 2003년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개정고시²⁰⁾를 통해 Catch-all 제도를 도입하여 북한지역을 포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비회원국에 대한 수출물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Catch-all제도에 따라 소금, 광물성연료, 비철금속, 약기, 완구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남북간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제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북한 현지생산을 위해 투자하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이 수출통제 대상²¹⁾인지,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V. 결론

남북교역은 16년을 거치는 동안 괄목할 만한 量的 성장을 하였지만, 質的 성장을 위해서는 원산지 등 제도적 문제 및 생산품의 판로 등 마케팅에 이르는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경협 당사자인 남·북 당국자, 교역업체, 유관 기관 및 학계의 연구와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고에서는 남북경협이 양적 성장과 함께 노출된 문제점, 즉 원산지 위장 반입문제, 위탁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산지판정문제 및 그 동안 다소 등한시 되어왔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에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는 신원산지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노력이 필

20) 고시 제2002-123호, 2002. 12. 24

21) 바세나르체제(WA)통제품목, 원사력 비확산체제(NSG)통제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통제품목, 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AG)통제품목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가 이에 해당한다.

요함을 언급하였다.

오랜 동안 이질적인 사회 및 제도 속에서 살아온 탓에,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처럼, 남북경협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도 “서두르기보다는 늦지 않도록”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1. 단행본

- KOTRA, 「남북경협전략」, KOTRA, 2003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로드맵 연구」, 2002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 2004
최홍석 외, 「최신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무역협회, 1998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2004
_____, 「남북교역실무안내」, 2003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실무길잡이」, 2001

2. 연구논문 및 자료

- 강홍중, “남·북한 관세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김석오, “남북간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내용과 의의”, 주간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089호, 2003
김현용, “남북 수산물교역현황과 교역증대방안”, 수협조사월보
산업자원부,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호,
한국무역협회, “2003년 남북교역 평가” www.kita.net(종합무역정보),
_____, “Catch-all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대책”, 2004
_____, “남북경협정보”, www.kita.net(종합무역정보) 한국무역협회,

ABSTRACT

A Study on Origin issues of Inter-korea trade

Park, Kwang So

The inter-korean trade volume has increased since 1989 and it reached 724million dollars in 2003. In a quantitative respect, it has grown 38 times last year compare to in 1989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a qualitatively respect.

First, take-in(import) with disguised origin raise a serious problem in the korea market. Second, products with made in DPRK will have difficulties to export in overseas markets. Last, take-out(export) of some product is also difficult because of catch-all issues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aise a question in argument about inter-korea trade issues and hope to be studied by many brilliant scholars. We also need to understand about inter-korea trade issues and our special conditions which are a divided country.

Key Words : 남북교역, 원산지, Inter-korean Trade